

 행정안전부	보도자료	작성과	생활공간정책과
	2018년 3월 22일(목) 조간 (3. 21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	과장 김상진 사무관 김태범
		연락처	02-2100-4260 02-2100-4262

오늘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

-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... 22일부터 시행 -

-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.
 -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‘자전거’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.
 -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「도로교통법」상 ‘원동기장치자전거’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.

【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】

-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,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(페달보조방식)
- ② 25km/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
-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
- ④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

- 다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 -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(스로틀-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)는 ‘원동기장치자전거’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.
 -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.

□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 (www.bike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○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. 또한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, 제조·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계속하여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.

○ 22일 이전에 구입한 해외제품 중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확인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*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.

*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해외제품의 안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(수신 :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) 등을 통해 신청 가능

□ 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·계도활동을 전개한다.

○ 지자체, 경찰 및 전국 자전거 판매점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, 자전거 제조·수입 업체, 온라인 쇼핑몰, 자전거 시민단체 등을 통해 온·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.

○ 이와 관련 21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. 행사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자전거안전 홍보대사 김세환(71세, 가수), 조호성(45세, 사이클감독) 등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안내하고, 전기자전거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전기자전거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.

- 3월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6개월간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, 경찰과 협력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활동을 추진하고, 9월 23일 이후에는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.
-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“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.”라며, “전동기의 힘을 이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안전한 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, 경찰과 협력해 계도·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